

#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

## 1. 접수기간: 2023. 6. 26.(월) 09:00~6. 30.(금) 18:00

※ 기간 중 24시간 접수(접수 첫날, 마지막 날 제외)

※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,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.

## 2. 접수방법

-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(<http://moj.uwayapply.com>)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([www.moj.go.kr](http://www.moj.go.kr)) 「법무정책서비스」 > 「시험정보」 > 「법조윤리시험」 > 「원서접수」를 통하여 접속한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하며, 위 방법 외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.

※ 원서접수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
## 3.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

■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출한 응시자격 소명서류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

- 법무부에서는 원활한 시험 준비 및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의를 거쳐 미리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에 갈음하여 「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」을 일괄 제출 받습니다.

※ 소명서류 일괄 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.

- 그러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「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으로 갈음」에 체크하면 별도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■ 위 갈음에 동의하지 않고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할 경우

-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「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◎ 소명서류 제출기간: 2023. 6. 26.(월) 09:00~6. 30.(금) 18:00

- 제출방법: 소명서류 제출기간 중 「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」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(2023. 6. 30.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)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# 4. 작성 내용 수정 및 접수 취소·환불

- 작성 내용(사진, 주소, 연락처, 응시희망 시험장 등)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
- 접수 취소는 시험 전일까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- 환불 기간

취소 시기	원서접수 기간 중	원서접수 기간 이후
환불 기간	접수 취소 후 3일 이내	시험 종료 후 20일 이내

#### 5. 시험장, 수험번호 및 좌석번호 체계 안내

##### ■ 시험장

- 서울 지역 5개 시험장, 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제주 지역 각 1개 시험장

##### ■ 수험번호 및 좌석번호 부여 안내

-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만료 후, 접수자 전체에게 무작위로 수험번호를 부여하고, 이후 수험번호와 별도로 시험장별 수용인원에 따라 생성된 좌석번호를 부여합니다.

※ 응시표 출력은 2023. 7. 14.(금) 09:00부터 가능하며, 이때 응시자 본인의 수험번호 및 시험장·좌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예시) 응시자 홍길동의 응시표

제14회 법조윤리시험 응시표		한글 성명	홍길동							사 진	
수험번호	20001	주민 등록 번호	8	9	0	1	0	1	-		*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
좌석번호	<u>연세대 광복관 025</u> 시험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하석번호		1	1	1	1	1	1	1		
		2023년 8월 ○○일 법무부장관									
응시자 준수 사항											
1. 응시표를 받는 즉시 수험번호 및 좌석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2. 본인의 좌석번호가 있는 시험장 이외의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 ~ 생략											

※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시험일 시험장에 출석하여야 하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## 6. 재외국민·외국인의 응시원서 접수

-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입력창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

## 7. 장애인 등 편의제공

- 시각장애, 뇌병변장애, 지체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「장애여부 선택」란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**2023. 7. 4.(화)까지**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(02-2110-3876)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 1부,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(2023. 7. 4.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)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별도의 편의제공 불요 시 ‘해당없음’ 체크

※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8. 코로나19 관련 원서접수 안내

- 확진자는 사전 신청을 거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(세부사항은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문 참고, 2023. 7. 14. 법무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게재 예정)

## 9.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중 불편사항 발생 시 콜센터(1588-8988)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